

2017학년도 제2차 〈제329차 이사회 회의록〉

2017. 6. 22.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7학년도 제2차

<제329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1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7. 6. 22(목) 07:30 ~ 10:0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6월 14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흥, 김선용 (11인)
- 감사 : 배홍기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3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우진 교무처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 사 이 영 현

- 1 -

이 사 신 상 협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29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7-166호(2017.6.14)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2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전면 개정(안), 의안 제3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7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동의(안), 의안 제8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등 9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교수의 본교 정착 후 논문 준비 기간 등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최소 소요연한인 4년과 동일하게 조교수 임용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김동연 총장께서 6월 2일자로 이사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사 정수를 1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에서 개정 요청한 내용들로, 지난 이사회에서 개정한 ‘학교의 장’을 ‘총장’으로 명칭 변경한 부분에서 정관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조문 중 제8항 제3호는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해임된 모든 학교의 장, 즉 총장 뿐만 아니라 교장도 포함되므로 ‘학교의 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정관 제50조, 제51조, 제53조는 교원의 휴직에 관한 조항들로 사립학교법 제59조의 변경된 내용을 담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제54조 직위의 해제와 해임에 관한 내용은 사립학교법에서 면직과 직위해제의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어서 해당 조문을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 자료의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 2 -

이 영 현

이 사

신 상 현

이사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2인</u></p> <p>2. 감사 2인</p>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2인을 상근으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p> <p>③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u>11인</u></p> <p>2. 감사 2인</p> <p>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p> <p>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이하 “교육이사”라 한다)</p> <p>④ 이사정수의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이하 “개방이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p>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p> <p>⑦ (삭 제)</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p>	<p>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내지 ⑧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현

현 행	개 정
<p>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u>총장</u>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u>학교의 장</u>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u>3년</u>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p>제48조(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조교수 : <u>4년</u>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p>제5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u>또는</u> 정신상의 장애로 <u>장기의 휴양</u>을 요할 때 2. <u>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u>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 지변 또는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 	<p>제5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u>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u>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u>장기요양</u>을 요할 때(<u>불임 · 난임으로</u>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u>병역법</u>」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내지 4. (현행과 같음)

< 간서명 란 >

이사장 이수경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u><신 설></u>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9.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u>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u> 8.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5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다만, 장기 휴양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 임용권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내지 5. (현행과 같음)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2. 제5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p> <p>3. 제5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p> <p>4. 제5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5. 제5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p> <p>6. 제5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6. 제5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p>
<p>7. 제5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u>6의2. 제5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p>
<p>8. 제5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준용한다.</p>	<p>7. (현행과 같음)</p> <p><u>8. 제5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u>9. 제5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u></p> <p><u>10. 제5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p> <p><u>11. 제5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를 준용한다.</u></p> <p><u>② 제1항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50조 제1호</p>	<p>제5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p> <p>② 제50조 제2호 내지 <u>제9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및 제5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이 연장된 교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제50조 제2호 내지 <u>제12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 및 제51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휴직기간이 연장된 교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54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자가 그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일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54조(직위의 해제) ①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⑥ 제1항 각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p>	<p>⑦ <삭 제></p>
<p><신 설></p>	<p>제54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p>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의 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제 2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전면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전면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사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목적 및 교원의 구분을 정비하고, 본교 교원인사규정과 동일한 체계로 장을 신설하여 구분하였으며 조교수 임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안)에 재정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전면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전면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전면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에 의해 임용된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교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교원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의2(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	제 2 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 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9 -

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전면 개정
<p>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 임용 된 자를 말한다.</p>	
<p>제 2 조(적 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제 3 조(적 용)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 3 조(교원의 자격 및 임용기준) ① 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라야 한다.</p> <p>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5항을 준용 한다.</p> <p>③ 의료원 교원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4 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5항을 준용 한다.</p> <p>③ <삭 제> → 제13조(임용절차 등)에 통합</p>
<p>제 4 조(임용의 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은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 5 조(임용 시기) <현행과 같음></p>
<p>제 4 조의 1(교원의 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p>제 6 조(교원의 임용기간) 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조교수 : 4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 영현

이사 | 상협

현 행	전면 개정
<p>제 5 조(겸직제한) ①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임(직)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임(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겸임(직)하는 경우 2. 타 기관의 무보수 비상근 직책을 겸임(직)하는 경우 3.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의 직책을 맡는 경우 4. 상업 · 공업 ·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② 교원의 겸직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겸임(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1항제1호의 세부사항 및 제1항제4호에 대한 허가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 7 조(겸직제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상업 · 공업 ·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맡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 5 조의 2(파견근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소속 교원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우학원이 설치 · 경영하는 기관 또는 국가기관 · 공공단체 · 정부투자기관 · 국내외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 의료기관 등에 일정기간 상근직책을 맡는 경우 <p>② 파견근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의 필요성 	<p>제 8 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상협

현 행	전면 개정
<p>2. 허가대상기관의 적합성</p> <p>3. 기타 필요한 사항</p> <p>③ 파견사유와 목적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교원을 지체 없이 원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p> <p>④ 제1항에 대한 허가기준 및 기간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 6 조(정 년)</u>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p>	<p><u>제 9 조(정 년)</u>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정년을 준용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을 정년퇴직일로 한다.</p>
<p><u>제 7 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u> ①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 10 조(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u>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u>제 11 조(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u>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 6장 제1절 제3관에 의한다.</p>
<p><장 신설></p>	<p><u>제 2 장</u> 임용 및 교수업적평가</p>
<p><절 신설></p>	<p><u>제1절</u> 신규임용</p>
<p><u>제 9 조(공개채용의 원칙)</u> 의료원 교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p>	<p><u>제 12 조(공개채용의 원칙)</u> <현행과 같음></p>
<p><u>제 10 조(임용절차 등)</u>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 13 조(임용절차 등)</u> 교원의 신규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전면 개정
<p><u>제 11 조(임용확정) 소정의 임용절차를 통과한 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u></p>	<u><삭 제></u>
<p><u>제 12 조(임용계약) 총장은 신규임용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기간 2. 보수 3. 책임사항 4. 재임용 5. 재임용 되지 않는 경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용조건 	<u>제 14 조(임용계약) <현행과 같음></u>
<p><u>제 13 조(직위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부여한다.</u></p>	<u>제 15 조(직위부여) <현행과 같음></u>
<p><u>제 14 조(특별채용) ① 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 2. 특정 임상분야의 권위자 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 4. 외국인 <p><u>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 16 조(특별채용)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현행과 같음></u></p>
<u><절 신설></u>	<u>제2절 교수업적평가</u>
<p><u>제 15 조(업적평가 시행) ① 의료원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u></p> <p><u>② 교수업적평가는 필요한 경우 학부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u></p>	<p><u>제 17 조(업적평가 시행) ① <현행과 같음></u></p> <p><u>② 교수업적평가는 필요한 경우 학과별, 전공별로 시행할 수 있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3 -

영현

이사

신상희

현 행	전면 개정
<p>제 <u>16</u> 조(평가세부기준) ① 교수업적평가는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임상교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p> <p>②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u>18</u> 조(평가세부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u>17</u> 조(평가결과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및 성과급책정 등에 활용한다.</p>	<p>제 <u>19</u> 조(평가결과활용) <현행과 같음></p>
<p><절 신설></p> <p>제 <u>18</u> 조(승진, 재임용 제청) ① <u>승진 · 재임용 대상교원은 해당기간의 관련 서류를 주임교수 및 병원장(임상교원의 경우)의 심사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대학(원)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료원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에게 제청한다. 총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승진 또는 재임용한다.</u></p> <p>② 휴직중인 교원이 승진 소요연수에 달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p>	<p>제 <u>20</u> 조(승진, 재임용 절차 등) <u>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 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 <u>18</u> 조의 2(승진 탈락자의 재심사) 승진 심사에 탈락한 교원은 1년 후 승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 <u>21</u> 조(승진 탈락자의 재심사) <현행과 같음></p>
<p>제 <u>19</u> 조(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특별승진) ① 교원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교수에서 교수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4년 3. <삭제 2012. 5. 22> <p>② 최저 승진 소요연수의 산정에 있어 1회에 한하여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 연수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p> <p>③ 최저 승진 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원 정책상으로 필요 한 파견근무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은 포함한다.</p>	<p>제 <u>22</u> 조(최저 승진 소요연수와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현

현 행	전면 개정
<p>④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 승진 소요연수를 1년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p> <p><u>제 20 조(승진·재임용 요건)</u>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u>전임교원</u>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서식) 60점 이상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 23 조(승진·재임용 요건)</u> 교원의 승진·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u>교원</u> 임용심사 평정점수(별지서식) 60점 이상으로 한다.</p>
<p><u>제 21 조(업적심사기간)</u> 승진 심사 시 업적심사 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로 한다. 단, <u>제19조 제3항</u>에 의해 제외된 무급휴직 기간의 연구업적은 포함하며, 「<u>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u>」에서 정한 필수연구업적은 현 직급 재직기간의 것을 포함한다.</p>	<p><u>제 24 조(업적심사기간)</u> 승진 심사 시 업적심사 기간은 최근의 직급별 최저 승진 소요연수로 한다. 단, <u>제22조 제3항</u>에 의해 제외된 무급휴직 기간의 연구업적은 포함하며, 「<u>의료원 교원 임용 규칙</u>」에서 정한 필수연구업적은 현 직급 재직기간의 것을 포함한다.</p>
<u><장 신설></u>	<u>제 3 장 신분보장</u>
<u><신 설></u>	<p><u>제 25 조(신분보장)</u>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u>정관</u>」 제6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p>
<p><u>제 22 조(휴직 및 복직)</u> ① 교원이 정관 제5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은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휴직중인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은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 전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u>제 26 조(휴직 및 복직)</u> ① 교원이 「<u>정관</u>」 제5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장은 의료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 23 조(당연면직)</u>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삭제 2012. 5. 22> 3. 정년에 달한 때 4. 사망한 때 	<p><u>제 27 조(당연면직)</u>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립학교법</u>」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늘석

이 사

- 15 -

이 사

신 상협

현 행	전면 개정
〈장 신설〉	<u>제 4 장 징계</u>
〈신 설〉	제 28 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의 사유 및 종류는 「사립학교법」 제 61조 및 「정관」 제 68조를 따른다.
제 24 조(복무) 교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교육, 연구, 진료(임상교원) 및 대내외봉사를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u>제 5 장 복무</u> 제 30 조(복무) <현행과 같음>
제 25 조(병가) ①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한 경우 총장은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 중의 교원에게 월일정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 31 조(병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26 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수 또는 출장 등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출국 예정 7일 전까지 교학팀으로 제출(임상교원은 병원장 경유)하여 결재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연수 또는 출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2 조(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수 또는 학회(출장) 등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 27 조(연구년) ① 의료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교수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료원 교원 연구년의 시행시기, 대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연구년) ① 의료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심상희

현 행	전면 개정
	부 칙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제6조의 조교수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일 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p>

제 3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지난 이사회의 정관 개정에 따른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근거조항의 변경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김성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 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6항에 의하여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이하 “특별임용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희

제 4 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수 1명, 부교수 1명, 조교수 3명 등 총 5명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조교수 1명입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5명, 부교수 2명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이 재임용 동의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정년 외국인교원은 조교수 1명으로 임용 동의 요청드렸습니다. 각 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별첨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다음으로 의료원 교원 재임용 동의 요청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5명으로 조교수 3명, 부교수 2명을 임용 동의 요청드렸습니다.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을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길주 : 이력내용 및 연구업적 등을 살펴보니 임용 동의(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수학과	정재훈	교수 2017.9.1 ~ 정년
	e-비즈니스학과	강민형	부교수 2017.9.1 ~ 2020.8.31 (3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이재성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소프트웨어학과	안정섭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물리학과	서호성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신소재공학과	Shankara Sharanappa Kalanur	조교수 (비)정년트랙/ 연구중점교원 2017.9.1 ~ 2019.8.31 (2년)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 사 이 영현

이 사 신상협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부교수
	약학과	박상규	부교수
	환경안전공학과	정승호	조교수
	신소재공학과	조인선	조교수
	전자공학과	허용석	조교수
	전자공학과	홍영대	조교수
	수학과	박보람	조교수
	미디어학과	정태영	부교수 (비정년트랙)
	불어불문학과	Magali Plattet	조교수 (비정년트랙)
의료원	법학전문대학원	Christopher Salatiello	조교수 (비정년 외국인교원)
	생리학교실	박찬배	조교수
	산부인과학교실	백지희	조교수
	간호학과	부신주	조교수
	소화기내과학교실	유병무	부교수
	영상의학교실	선주성	부교수

제 5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수 연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조교수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성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u>3년</u>.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제6조(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u>4년</u>.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6조 제3호의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한다.</p>	

제 6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INC+ 사업선정에 따라 기구명칭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 사업이 2단계 재진입에 실패함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발전계획 및 LINC+ 사업 계획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소속을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영현

- 20 -

이 사 신상협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일반대학원 : 대학원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	<p>제5조(기구) ① 내지 ⑦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후 호 석

이 사 이 영 현

이 사 신 상 협

현 행	개 정
<p>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p> <p>4. <삭제></p>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어교육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 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 7. 학생처 : 아주상담 ·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8. 총무처 : 예비군연대 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 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 11. 중앙도서관 : 출판부 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13. <삭제> 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u>산학 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및 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를 둔다</u></p> <p>⑨ 산학부총장 직속기구로 프로젝트지원팀 및 창업지원단을 둔다.</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u>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u> 육성사업단을 둔다.</p> <p>⑨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삭제></p> <p>② 브랜드전략실은 브랜드 차별화와 관리를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p> <p>③ 비서실은 총장 의전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대외협력팀을 둔다.</p> <p>④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u>은 정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p> <p>⑤ <삭제></p> <p>⑥ <u>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는 의료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u></p> <p>⑦ 브랜드전략실 및 비서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브랜드전략실의 경우 계약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할 수 있다.</p> <p>⑧ <u>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p> <p>⑨ 대외협력팀에는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u>의료인문융합콘텐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제12조의2(부총장직속기구) ① 프로젝트지원팀은 산학부총장 직속으로 교수 연구수주 진흥을</p>	<p>제12조(총장직속기구)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정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삭제></p> <p>⑦ (현행과 같음)</p> <p>⑧ <u>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에는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며, 세부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p> <p>⑨ (현행과 같음)</p> <p>⑩ <삭제></p> <p>제12조의2(부총장직속기구) ①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u>추호석</u> 이사 이영현 이사 이상협 <small>- 23 -</small>	

현 행	개 정
<p>위한 기획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p> <p>②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을 둔다.</p> <p>③ 프로젝트지원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④ 창업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⑤ 창업지원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⑥ 창업지원단의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u><신설></u></p>	<p>② 창업지원단은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하부 조직으로 창업기획팀과 창업지원팀 및 창업보육센터를 둔다.</p> <p>③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창업보육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u>부 칙</u></p> <p><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 7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전임교원 명예퇴직 동의(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1명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 관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이 영 현

이 사 신 상협

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명예퇴직 동의 내용

소 속	성 명	직급	퇴직일자
수학과	하 영화	교 수	2017.8.31부

제 8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 25 -

이사 신상현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의결 요구 동의(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9 호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빌의.

교무처장 장우진 :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한 교육용·사무용 기기, 집기 등 총 929점, 취득가액 817,992,838원의 고정자산을 불용 처리하고자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문길주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희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29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29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7년 6월 22일

이사장 추호석	
이사 김성진	
이사 윤성복	
이사 문길주	
이사 신희택	
이사 김성	
이사 박상일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최홍	
이사 김선용	
감사 배홍기	